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제정 2011. 5. 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17호

개정 2014. 1.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0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곳
 -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라.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4.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5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승인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을 수행 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상권활성화사업 세부시행계획”이란 법 제19조의5에 따라 승인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권관리기구가 사업별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연차별 계획을 말한다.

- 제3조(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① 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 사업비의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는 지원예산 규모, 지자체 재정자립도, 상권활성화구역 특성 및 민간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 기반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시설사업의 국고보조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하여야 하며, 상권관리기구에 위탁하여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100%를 지원하되, 지원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상권활성화사업 평가위원회) ① 청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상권활성화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적정성 여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3. 기타 상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경영, 경제, 도시계획, 건축, 문화, 디자인, 관광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제5조(상권활성화 지원센터) ① 진흥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 내에 상권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의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상권활성화 외부자문단(이하 “외부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권활성화사업 외부자문단의 구성·운영
2.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3. 상권활성화사업을 실현하는 전문가에 대한 교육
4.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자문·상담 및 지도
5. 상권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조사 사업
6. 해외 전문 상권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7. 상권활성화사업 홍보
8.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청장 또는 공단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외부자문단은 사업방향 및 계획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영, 경제, 도시계획, 건축, 문화, 디자인, 관광 등 각 분야 전문가 구성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승인신청 및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2. 상권활성화사업 세부시행계획(이하 “사업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자문
3. 상권활성화사업 성과 평가
4. 기타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청장 또는 공단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청장은 지원센터의 업무지원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청장은 3년마다 상권활성화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권활성화사업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추진체계
4. 사업비 지원규모 및 지원기준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의 추천) ① 시·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상권활성화 지원계획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승인신청서와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신청서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추천 서류에 대한 검토) ① 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추천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미리 서류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의 서류검토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의 선정) ① 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추천한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류평가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평가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의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구역
 2. 상업·유통·업무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구역
 3. 해당 구역의 쇠퇴가 주변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구역
- 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촉진사업 관리지침」 제6조·제6조의1에 의한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권활성화구역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 ③ 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의해 선정된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장 상권관리기구

제11조(상권관리기구의 설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고시한 날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 통보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고자 하는 상권관리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권관리기구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업무를 담당하는 상권관리전문가(이하 “타운매니저”라 한다)의 인건비
2. 세미나 및 연수회 경비(발표자 원고료, 여비, 회의비, 장소 임대료, 자료 작성

- 비, 인쇄비, 소모품 비용 등 경비 일체)
3.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4. 기타 상권관리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비용
 - ④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담당과장 또는 팀장은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에 한해 상권관리기구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⑤ 상권관리기구에는 타운매니저를 보좌하는 인원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12조(타운매니저의 자격요건) ① 상권관리기구는 시행규칙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라 타운매니저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타운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1. 경영, 경제,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경영, 경제,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경영, 경제,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분야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전문성이 충분히 갖추어 졌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타운매니저와 상인회 대표,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은 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상권관리전문가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타운매니저에 대한 보수 등 처우에 대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타운매니저의 임무) ① 제12조에 의해 임명된 타운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권활성화구역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료제공
2. 상권활성화구역 세부추진계획 수립
3. 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및 관리

- 4. 상권활성화사업의 추진
- 5.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 6. 기타 상권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사업 추진

② 타운메니저는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전결권을 갖는다.

- 1. 상권관리기구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또는 일반수용비(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안내책자·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 간행물구입비 등)로서 건별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 2. 제11조제3항제2호에 의한 세미나 및 연수회 경비로서 건별 지출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제5장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제14조(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승인) ①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협의회와 협의하여 제2조제5호에 의한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지방청, 시·도지사 및 진흥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변경승인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사업 세부시행계획의 변경) ① 상권관리기구는 제14조에 의해 승인된 세부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상권활성화협의회와 협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는 때에는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를 초과하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청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는 경우 시설현대화사업과 상권활성화사업간 예산을 전용하도록 변경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국고보조금의 지급) ① 상권관리기구는 당해 상권활성화구역의 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집행계획과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계

획된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련 국고보조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따른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제출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의 사업비 집행계획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권관리기구에 지급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진도 업무보고 및 점검 등) ① 상권관리기구는 당해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기별 상권활성화사업 진도보고서를 지방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단이사장이 진도보고 주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 진도보고를 받은 지방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단이사장은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삭 제>

제6장 사업비의 조성·관리 및 정산

제18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상권관리기구는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수탁은행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제16조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예산의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

④ 상권관리기구는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하여야 한

다.

⑤ 상권관리기구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방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단이사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이사장은 상권관리기구의 사업비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점검 포함)을 실시 할 수 있다.

⑦ 사업비중 시설사업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상권관리기구는 월별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③ 상권관리기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보조금 잔액(이자 포함)을 공단이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나. 상권활성화사업이 최종 종료된 때

다. 상권활성화사업이 중단된 때

④ 상권관리기구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와 제18조제5항에 따른 장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상권관리기구가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귀책 대상기관 또는 귀책 대상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사업기간 중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공단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정산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20조(사업결과 보고) ① 상권관리기구는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간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장, 지방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및 공단이사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체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청장, 지방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및 공단이사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성과관리, 포상 등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 5인이내의 외부자문단을 활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취득 및 관리) ① 국비 보조금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진흥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상권관리기구에 귀속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 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월 2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1.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요령

1) 기초조사서

- 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대상지역의 기초조사서는 인구·산업(특히 상업)의 현황, 토지이용 상황 등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 구역의 종합적인 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중에서 당해 시·군·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나.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등을 방법으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 다. 기초조사는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라. 타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마.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통계자료를 가능한 한 최근 10년간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바.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표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하여 인접한 지역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아. 기초조사를 통하여 각 해당 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자. 기초조사서는 다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해당 구역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
 - 해당 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모든 기능을 파악하고 이해
 - 해당 구역의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자료로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지표로 활용
 - 해당 구역과 인접지역의 상호간의 관계와 전체의 구조를 이해
 - 조사 자료의 지속적인 축적

2) 구역지정 신청(변경) 사유서

- 가. 구역지정 신청(변경) 사유서에는 기초조사를 토대로 신청한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해당 구역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 나. 신청대상지 주변지역의 관광지 등과 같은 집객력 있는 요소와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계획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다. 최근 2개년도 이상의 매출액 변동사항, 종사자 규모, 빈 점포 추이, 유동인구 등 기초특성을 파악하여 상권의 변동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 가. 소요예산은 가능한 단기목표계획과 중기목표계획을 구분하며, 조속히 필요한 사항은 단기목표계획으로, 해당 구역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중기목표계획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나. 해당 지자체가 비용부담이 많은 사업부터 단기목표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구역지정 효과서

- 가. 구역지정 효과서는 상기 기초조사서를 통해 설정한 활성화 지표를 활용하여 수치목표의 추이를 사업계획 기간의 매년도별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구역경계도

- 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표시에는 도시계획과 지적이 포함된 축척 1:1,000 이상의 지형도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시·군·구의 규모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면적에 따라서 축척을 조정할 수 있다.
- 나. 상권활성화구역은 상업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나, 반드시 상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분만을 구역대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아닌 용도지역도 일부 포함 할 수 있다.

6) 개략적인 상권활성화 사업 내용

- 가. 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내용을 연차별로 사업명, 추진주체, 사업내용, 계획기간, 사업비용, 재원조달 방안, 사업실시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으로 개략적으로 작성한다.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가. 상권관리기구의 조직 형태(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이사회 구성방법, 상권관리기구 운영비용 조달계획, 직원 및 타운매니저 채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상권관리기구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그 구성원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

8) 관련 기관 및 행정부서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

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되어야 하는 시설이 존재할 경우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또한 기타 관련 기관 및 행정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결과와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변경)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

가. 구역 내에 존재하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조직 등이 해당 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변경) 신청을 요청한 경우, 해당 상인조직의 총회 기록 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10) 주민의견서 및 동의서

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에 있어 해당 구역 내 상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주민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여 작성하며, 구역의 특성에 따라 내용을 참조하여 조사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

- 주민의견 조사의 방법과 시기
- 응답자 성별, 나이, 사업자·종업원·관계자 형태, 매장의 소유형태, 매장 규모, 매출규모 등
- 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상인의 찬성 수 및 반대 수
- 해당 활성화구역의 시급한 개선사항 등

다. 구역지정에 대한 별도의 동의서 양식은 없으며, 주민의견 수렴방법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해당 시·군·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동의서 제출현황을 요약하여 제출하고 현장평가지 징구한 동의서를 평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1) 사업계획

가. 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내용을 계획한 연차별로 사업명, 추진주체, 사업내용, 계획기간, 구체적인 사업비용, 재원조달 방안, 사업실시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업계획 기간은 5개년도 내외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관련 기관 및 행정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되어야 하는 시설이 존재할 경우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또한 기타 관련 기관 및 행정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결과와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 시 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상권관리기구 세부 운영계획서

가. 상권관리기구의 조직 형태(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이사회 구성 방법, 상권관리기구 운영비용 조달 계획, 직원 및 타운매니저 채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상권관리기구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그 구성원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 시 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완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주민의견서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서와 동일한 것을 첨부할 수 있음. 단,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 시 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이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2.11.30>

상권활성화구역 [] 지정 [] 변경 승인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 기관	지자체명	기관장 성명	
	담당부서	부서장(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구역 개요	구역 명		
	구역지번 및 면적	지번	
		대지(㎡)	건물(㎡)
		영업장 면적(㎡)	점포 수(개)
	구역 내 시장 명		
사업목적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이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조사서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 구역 지정의 효과 5. 구역경계도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 주민의견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운영계획서

「상권활성화구역 신청을 위한」
사업운영계획서

20 . . .

제 출 자

사업운영계획서 작성 요령

1. 분량은 A4(13포인트)용지 20쪽 내외(겉 표지 제외)로 작성
2. 신청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할 것
3. 간단한 참고자료나 이미지·도표 등은 본문에 삽입하고, 분량이 많은 관련 참고자료는 사업계획서 뒷편에 첨부할 것
4. 제시 자료의 현실성을 담보토록 할 것(제시자료의 허위, 비현실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제시할 경우 불이익 예상)
5.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상세한 요령은 서식 내 설명을 참고하고 서식 외 추가적인 자료작성은 가능함

□ 사업운영계획서 목차

- 요약서
- 목 차
- 본 문

제1장 신청기관 개요

- 1.1 신청기관 개요

제2장 기초조사서

- 2.1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 2.2 대상 구역의 종합적 여건

제3장 구역 지정(변경) 신청 사유서

- 3.1 구역 지정(변경) 사유

제4장 구역 경계도

- 4.1 구역 경계도

제5장 사업내용

- 5.1 상권활성화사업

제6장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 6.1 사업예산 및 조달계획

제7장 구역 지정의 효과

- 7.1 구역 지정의 효과

제8장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 8.1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제9장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 9.1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

제10장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 10.1 회의록

제11장 주민의견서

- 11.1 주민의견서

제1장 신청기관 개요

1.1 신청기관 개요

지자체명	
기관장 성명	
기관 주소	
담당부서	
담당부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름 : ▪전 화 : ▪휴대폰 : ▪이메일 :
실무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름 : ▪전 화 : ▪휴대폰 : ▪이메일 :

※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추가 가능

제2장 기초조사서

2.1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해당 구역에 포함된 시장 또는 상점가 개요	※ 대상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지도 등 첨부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	※ 지역의 절반이상이 상업지역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점포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활성화구역 내 점포 수 ※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요건 충족
상업활동 위축여부	※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요건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

2.2 대상 구역의 종합적 여건

대상 구역의 종합적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산업, 상업, 토지이용 현황, 공간 등 대상 구역의 종합적 여건에 대하여 기술 ※ 지역여건, 상권특성, 상권쇠퇴 현황 등 대상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작성
---------------	--

제3장 구역 지정(변경) 신청 사유서

3.1 구역 지정(변경) 사유

-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사유를 기술하고, 필요성 서술
- 기초조사를 토대로 신청한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해당 구역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논리성과 타당성중심으로 기술
- 최근 2개년간 매출액 변동사항, 종사자 규모, 빈 점포 추이, 유동인구 등 기초특성을 파악하여, 상권의 변동에 대해 기술

제4장 구역 경계도

4.1 구역 경계도

구분	내용
위치	**시 **동 ** 일대
종합 위치도	※ 상권활성화구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적도, 위성지도, 사진 등을 활용하여 이해가 용이하도록 작성
면적	
특성	※ 상권활성화구역의 특성에 대하여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제시

제7장 구역 지정의 효과

7.1 구역 지정의 정량적 효과

수치목표	현황	1차 목표년도	2차 목표년도	3차 목표년도	4차 목표년도	최종
예) 유동인구	0000명					

※ 구역지정과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정량화된 데이터로 제시할 것

7.2 구역 지정의 정성적 효과

※ 구역지정과 사업시행에 따른 정성적 기대효과(인지도 증대, 이미지 제고,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사업추진 유관한 효과를 제시할 것

7.3 지역경제 파급효과

※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제시할 것

제8장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1 사업추진체계

8.2 상권관리기구 구성계획

※ 조직성격(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이사회 구성방법(참여 관계자), 조직원 구성 방법, 지자체 참여 방법,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방법, 상권관리기구 운영자금 확보 방법, 채용 예정인 타운 매니저 이력 등에 대해 기술

8.3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

※ 상권관리기구 인력운영, 협의체 운영, 예산집행, 마케팅, 각종 행사 등 관리기구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제시할 것

8.4 지자체 전담조직 현황

제9장 관련 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향후 연계 계획

9.1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연번	관계부서	협의내용	조치계획	비고
1				
2				
3				

9.2 관련 중앙정부 정책 연계 활용계획

제10장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0.1 회의록

제11장 주민의견서

11.1 주민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서류평가표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서류평가표			
접수번호		평가일	20
신청기관		상권활성화구역명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적합	부적합
상권활성화 구역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유통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구역 내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인구 및 사업체 수 등 3개 항목 모두 최근 2년간 연속 감소한 곳(인구는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		
신청서류 완비 여부	◦ 신청서 첨부서류		
최종 판정			
평가의견			

평가위원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현장평가표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현장평가표								
접수번호		평가일	20					
신청기관		상권활성화구역명						
평가지표	배점	평가내용	평점					평가결과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1. 사업의 적합성 및 참신성(15)	7	• 구역지정의 적합성 및 일치성	1	2	4	6	7	
	8	• 기본 및 사업계획의 참신성	1	3	5	7	8	
2. 사업의 역량성(35)	7	• 기본계획의 적절성	1	2	4	6	7	
	4	• 지역상인 및 정부, 지자체와의 유기성	0	1	2	3	4	
	5	• 지자체장 및 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 의지와 업무인지 여부	1	2	3	4	5	
	12	• 지자체 예산확보 여부	2	4	7	9	12	
3. 사업의 지속성(30)	7	• 지자체 내부 조직간의 협조관계 • 전담조직의 독립성과 구성인력 확보여부	1	2	4	6	7	
	8	• 이해관계자 참여와 협조계획	1	3	5	7	8	
	5	• 구역 내 상인 및 주민동의서 제출	50%미만	50-59%	60-69%	70-79%	80%이상	
	10	• 관리기구의 운영방안 및 지속사업 확보정도	1	2	3	4	5	
4. 사업의 경제성(15)	10	• 관리기구의 운영방안 및 지속사업 확보정도	2	4	6	8	10	
	7	• 도시(관리)계획과의 연계 및 지속가능성	1	2	4	6	7	
4. 사업의 경제성(15)	15	• 지역 및 구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1	4	8	12	15	
5. 기타(5)	5	• 중앙정부의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 심사위원 주관적 관점	1	2	3	4	5	
		합계						점
평가의견								

평가위원 :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상권활성화사업 진도보고 서식

○○년 □□ 상권활성화사업 진도보고서					
대상구역 :			담당자 : (서명)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20 년 월 일 ~ 월 일		
구분	진도 실적		진도 계획		
사업명 1	●		●		
사업명 2	●		●		
사업명 3	●		●		
건의사항	●		●		
예산실적 (천원)	구분	직접비	간접비	합계	집행율(%)
	집행실적				
	총사업비				

별첨 : 참조자료 1부. 끝

*집행율 = 집행실적 / 총사업비

지방청장 · 시장(군수) · 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상권활성화사업 월 예산집행 실적보고 서식

○○년 □□ 상권활성화사업 ()월 예산집행실적				
대상구역				
담당자	연락처 (Tel/e-mail)			
예산 집행 실적	(단위:천원)			
	날짜	주요 내용	집행액	집행잔액
누계집행율	구분	누계기간	금액	집행률(%)
	내용	월 ~ 월		
위와 같이 상권활성화사업 예산집행실적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타운매니저 : (서명)				
시장(군수) · 공단이사장 귀하				

「000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추진실적보고서

20 . . .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작성 요령

1. 분량은 A4(13포인트)용지 20쪽 내외(겉 표지 제외)로 작성
2. 추진한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할 것
3. 실적은 반드시 집행완료 실적을 제시하되, 미완료 실적은 추진율, 향후 추진사항 등을 확인가능토록 제시할 것
4. 모든 실적은 본 사업의 실행결과 나타난 실적을 의미함
5. 간단한 참고자료나 이미지·도표 등은 본문에 분량이 많은 관련 참고 자료는 사업계획서 뒷편에 첨부할 것
6. 제시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평가 불이익 등 예상
7.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상세한 요령은 서식 내 설명을 참고하고 서식 외 추가적인 자료작성은 가능함

제 출 자	시·군명	
	구역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 사업추진실적보고서 목차

- 요약서
 - 목 차
 - 본 문
 - 제1장 공통성과 지표
 - 1.1 영업실적
 - 1.2 상권활성화
 - 1.3 고객반응 및 이미지 향상
 - 제2장 사업추진 체계
 - 2.1 사업추진체계
 - 2.2 전담조직 구성 및 활동성과
 - 2.3 자체 평가 및 평가보고회 개최실적 등
 - 제3장 사업추진실적
 - 3.1 상인의식개혁 및 교육실적
 - 3.2 쇼핑환경 개선실적(시설현대화)
 - 3.3 마케팅 및 홍보 이벤트 실적
 - 3.4 연계 사업추진 및 협력 네트워크 추진실적
 - 3.5 기타 사업추진실적
 - 제4장 사업효과
 - 4.1 지역경제 파급효과
 - 4.2 사업 지속가능성
 - 4.3 타 사업 시너지 창출효과
 - 4.4 기타
 - 제5장 이해관계자 사업추진 만족도 및 반응
 - 5.1 사업추진만족도
- 첨부 : 관련자료

제1장 공통성과지표

1.1 영업실적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달성율	비고

※ 성과지표는 영업실적, 고객증가율, 기타 내용을 사업운영계획에 제시한 핵심성과지표를 작성

1.2 상권활성화

※ 상권활성화에 대한 사업추진성과는 상인의견, 고객증가, 지역전문가 의견, 유동인구 등 관련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중심으로 작성

1.3 고객반응 및 이미지 향상

※ 사업추진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사업추진 전/사업추진 후의 고객반응 및 이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시 제시

제2장 사업추진체계

2.1 사업추진체계

□ 조직도

※ 상권관리기구, 자문단 등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작성

□ 조직별 업무분장

조직명	업무분장	비고

2.2 전담조직 구성 및 활동성과

□ 전담조직별 인력현황

조직명	조직구성원			비고
	직위	성명	업무	

□ 주요 활동성과

※ 전담조직의 주요활동성과를 항목별로 작성

2.3 자체 평가 및 평가보고회 등 개최실적

□ 자체 평가실적

평가제목	일자	주요 내용	비고

※ 본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적을 근거로 한(관련근거 별첨)

□ 주기적 추진상황 평가 보고회 및 성과점검 회의 등

회의제목	일자	주요 조치사항 및 성과

※ 주요 조치사항 및 성과는 핵심적인 사항만 정리하여 기입(관련근거 별첨)

제3장 사업추진실적

3.1 각 사업별 추진 실적

사업명	투입인원	사업 내용	투입예산

※ 상세내용은 별도 자유롭게 정리

3.2 상권 환경 개선실적(시설현대화)

사업명	일자	사업 내용	투입비용

※ 상세내용은 별도 자유롭게 정리

3.3 연계 사업추진 및 협력 네트워크 추진실적

□ 연계 사업추진실적

사업명	일자	사업 내용	비고

□ 협력네트워크 추진실적

사업명	일자	사업 내용	비고

3.4 기타 사업추진실적

제4장 사업효과

항목	자체 평가결과	비고
4.1 지역경제 파급효과		
4.2 사업지속 가능성		
4.3 타 사업 시너지 창출효과		
4.4 기타 파급효과		

※ 파급효과에 대하여 정량적, 정성적 파급효과를 기술함

제5장 이해관계자 사업추진 만족도 및 반응

※ 이해관계자인 상인, 지역주민, 고객 등의 사업추진에 대한 만족도 및 반응 등을 자유롭게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추진실적 평가표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추진실적」
평 가 표**

대상기관		상권활성화구역명	
------	--	----------	--

구분	평가 지표	배점	평가 내용	평 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공통성과 지표 (30)	1. 영업실적(매출, 이익, 고객 증가 등)	15	• 당초계획대비 목표달성율을 기준으로 평가(배점×달성율=평점)	15	12	9	6	3
	2. 상권활성화 정도	5	• 상권활성화에 대한 상인의견, 지역전문가 의견 등 청취를 통한 종합판단	5	4	3	2	1
	3. 고객반응 및 이미지 향상	10	•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고객반응 및 이미지 향상	10	8	6	4	2
사업추진 체계 (20)	1.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5	•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및 체계 구축의 적정성, 효율적 운영	5	4	3	2	1
	2. 전담조직 구성 및 활동성	10	• 전담조직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 활동성	5	4	3	2	1
	3. 자체 평가 및 평가 보고회 등 개최	5	• 사업추진에 대한 자체평가 및 평가보고회 등 모니터링 실적	5	4	3	2	1
사업추진 실적 (25점)	1. 상인의식 개혁 및 교육 실적	10	• 상인의식 개혁을 위한 워크샵, 상인대학 등 교육실적	10	8	6	4	2
	2. 쇼핑환경 개선 실적	5	• 쇼핑환경 및 고객편의시설 등 인프라 개선실적 등	5	4	3	2	1
	3. 마케팅/홍보 이벤트 실적	5	• 장소마케팅, 브랜드마케팅 등 구역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실적	5	4	3	2	1
	4. 연계 사업추진, 협력 네트워크 추진실적	5	• 중앙부터 타 사업과의 연계사업 실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5	4	3	2	1
사업효과 (20)	1. 지역경제 파급 효과	10	•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타 산업 연계 파급효과 등	10	8	6	4	2
	2. 사업 지속가능성	5	• 사업기간 종료 후 중장기 사업추진계획 및 지속가능성	5	4	3	2	1
	3. 타 사업 시너지 창출 효과	5	• 타 사업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너지창출 효과	5	4	3	2	1
기타 (5점)	이해관계자 사업추진 만족도 및 반응	5	• 상인, 지역주민 등의 사업추진에 대한 만족도 등	5	4	3	2	1

합 계 **점**

평가의견	
------	--

평가일자 : 20
평가위원 : (서명)